

瑞山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가. 發議日字 : 1998. 8. 19

나. 發議者 : 박영웅의원의 6인

다. 回附日字 : 1998. 8. 21

라. 上程日字 : 1998. 8. 28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賈大鉉 議員)

가. 改正理由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 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 하고, 잘못 표기된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
-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 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정수를 8인에서 7인으로 조정함(안제2조).
- 조직개편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지정함(안제3조).
-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특별위원회 설치시 활동 기간을 정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7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내용과 잘못 표기된 일부 부서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행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의 삭제로 인하여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 폐회중 위원회 활동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회의 진행이 그 주요 기능이며, 상임위원회 간사의 임무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3 호
의결년월일	1998. 9. 3. (제 호)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영웅의원외 6인
발의년월일	1998. 8. 19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발의년월일 : '98. 8. 19

발 의 자 : 박영웅의원외6인

□ 개정이유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시의회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된 조례에 표기된 부서의 명칭중 변경 또는 잘못 표기된 명칭과 특별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에서 7인으로 조정(안제2조).
- 나. 조례에 표기된 부서의 명칭중 변경 또는 잘못 표기된 명칭조정(안제3조).
- 다.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함(안제5조).
- 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함(안제7조)

□ 참고사항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특별위원회의 설치)
-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건설위원회 : 7인

제3조제2항제1호 나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실 · 문화공보담당관실 · 자치행정과 · 세무과 · 회계과 ·
종합민원실 · 사회여성복지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지역경제과 · 지적과 ·
보건소 · 문화회관 ·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과 · 축산해양과 · 산림과 · 환경보호과 · 건설과 · 도시건축과 · 교통과 ·
농촌지도소 · 상하수도사업소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2(생략)</p> <p>3. <u>산업·건설위원회</u> : 8인</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생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u>의회운영위원회</u></p> <p>가. (생략)</p> <p>나. <u>의회사무과</u>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생략)</p> <p>2. <u>총무위원회</u></p> <p><u>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정책개발담당관·총무과·사회진흥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보건소·대산출장소·문화회관관리사무소·시립도서관·해미읍성관리사무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u>산업·건설위원회</u></p> <p><u>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축산과·수산과·산림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과·건축과·수도과·교통행정과·지적과·농촌지도소·상수도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환경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p> <p>1~ 2(현행과 같음)</p> <p>3. <u>산업건설위원회</u> : 7인</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u>의회운영위원회</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의회사무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현행과 같음)</p> <p>2. <u>총무위원회</u></p> <p><u>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과·세무과·회계과·종합민원실·사회여성복지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역경제과·지적과·보건소·문화회관·시립도서관</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u>산업건설위원회</u></p> <p><u>산업과·축산해양과·산림과·환경보호과·건설과·도시건축과·교통과·농촌지도소·상수도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u> 소관에 관한 사항</p>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의회는 의회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p>	<p>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⑤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p>